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-205호

행정7급(노무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최종합격자 명단 및 서류제출 안내

경인지방우정청 행정7급(노무)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0일
경인지방우정청장

1. 최종합격자

채용직급	근무기관	최종합격자 응시번호
행정주사보(7급)	경인지방우정청	경인001

2. 임용시기 : 별도 통보

3.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
○ **제출기한** : 2020. 11. 17.(화)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'20. 11. 17. 소인까지 유효, 퀵서비스 불가)

○ **제출장소** :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**행정7급(노무)채용담당** ☎ 031-8014-3256
※주소 : ㉾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-55(탑동)

임용 시 제출하여야 할 임용관계서류

① 신원진술서 2부 : 붙임참조 ※ 동일한 사진(3㎝ × 4㎝) **2매 부착**

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: 붙임참조

③ 기본증명서(상세) 2통 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④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 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⑤ 주민등록초본 1통(군 병적사항 기재된 것) → 호봉산정시 참고

※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, 주소이력 전체 기재된 것

⑥ 최종학교졸업(재학·휴학·재적)증명서 1통

※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

⑦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: 붙임참조

※ 2019.12.24.이전 양식 사용불가,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

⑧ 통장사본 1부

⑨ 경력증명서 1통(해당할 경우)

⑩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(해당할 경우)

4. 행정사항

○ 합격자의 임용 시기는 **인력 상황에 따라 바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시기·절차 등은 인사담당자가 별도 통보 예정**

○ 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,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, 기타 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○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써 임용 등에 차질이 생겨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전화, SMS, 개인메일 등 상시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함

○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'유사경력'은 인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, 경력요건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○ 기타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(031-8014-3256)로 문의

[별지 제20호서식]

(3쪽 중 제1쪽)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table>
<tr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한 자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td rowspan="4">【 사 진 】
사진파일 가능
(3cm×4cm)·
(3.5cm×4.5cm)</td></tr>
<tr><td>등록기준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실거주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직 장</td><td colspan="3">직장명 :
소재지 :</td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직장전화 :
휴 대 폰 :
E-mail :</td></tr>
<tr><td>국 적</td><td>☐ 대한민국</td><td colspan="2">☐ 복수국적
국가명:</td><td>☐ 외국국적
국가명:</td><td>배우자 및 자녀 국적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격·면허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재 산</td><td>본인 및 배우자</td><td colspan="5">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</td></tr>
<tr><td>미혼 자녀</td><td colspan="5">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정당·사회
단체 활동</td><td>☐ 있음</td><td colspan="2">단 체 명</td><td colspan="2">기 간</td><td>직 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☐ 없음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병 역</td><td rowspan="2">본 인</td><td>군 별</td><td>병 과</td><td>최종 계급</td><td>기 간</td><td>미필 사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. . ~ . .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녀
(성명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. . ~ . .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자녀
(성명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. . ~ . .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학 력
(고교이상)</td><td>학 교 명</td><td colspan="2">기 간</td><td>전공 학과</td><td>학 위</td><td>소 재 지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. . ~ . .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
			. . ~ . .		
			. . ~ . .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·직 책	연 락 처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**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**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 성 자 성명 인(서명 또는 날인)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국적(배우자, 자녀 포함), 자격·면허, 재산(배우자, 미혼 자녀 포함), 병역(자녀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,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 및 동반가족 등 포함), 가족관계(부모, 자녀, 배우자 부모 및 북한거주가족 등 포함), 친교인물(성명, 직업 등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**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**동의함 [ ]** **동의하지 않음 [ ]**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**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**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**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**동의함 [ ]** **동의하지 않음 [ ]**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**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 ]**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■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
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■ 본인(가족 포함)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
▪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▪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및 가족 동의(자녀는 결혼·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,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)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서 명	
	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본인			자필서명	자필 서명
배우자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자녀			자필서명	해당없음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(밑줄은 민감정보)

본 인(예시)	가 족(예시)
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, 공무원인사기록(행자부·인사처) ▪ 주민·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	▪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부(행자부) ▪ 출입국자료(법무부) ▪ 토지·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(국토부) ▪ 소득 및 개인·법인 사업자 자료(국세청) ▪ 병적자료(병무청·기무사) ▪ 금융기관 대출자료(한국신용정보원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 중		kg
허리둘레		cm	혈 압		
(교정)시력	좌: ( )	색 신 (색 각)		(교정)청력	좌: ( )
	우: ( )				우: ( )
종 양 질 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부X선 검사		
기 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 격 [ 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경인지방우정청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우정9급공무원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 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 라고 적습니다.
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